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5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정문 · 신정훈 · 이상식
노종면 · 조계원 · 김 현
권칠승 · 최민희 · 김용만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광고주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집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부광고 본연의 목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
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
제3항·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2항·제3항 신설 등).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선정”을 “선정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④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

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부광고의 일시중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이하 “중단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 제308조 또는 제309조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단, 언론사등이 보도 작성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단, 언론사등이 보도 작성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중단요청은 제1항 각 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중단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단 기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집행내역 공개)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자료 요청”을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품질, 공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부광고 평가를 위하여 정부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주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단 중 “제5조”를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지침) 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 기준, 절차 등 정부기관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매체 선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u><신 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생략)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u> <u><신 설></u>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현행과 같음) <u>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u>

<신 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 선정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의2(정부광고의 일시중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이하 “중단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 제30
8조 또는 제309조제2항의 죄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단, 언론사등이 보도 작성자
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
다.)

3.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유
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단, 언
론사등이 보도 작성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중단요청은 제1항
각 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신 설>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통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중단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단 기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집행내역 공개)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품질, 공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부광고 평가를 위하여 정부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

<u><신 설></u>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 이 <u>제5조</u>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u>제15조</u> · <u>제16조</u> (생 략)	<u>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주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제13조(시정조치 요구) ----- ----- -- <u>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 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u>---- ----- ----- -----. <u>제15조(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지 침) 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 기 준, 절차 등 정부기관등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u>
--	--